

## 2018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금 선발안내(학생용)

※ 장학금 신청은 '18.1.5(금) 09시부터 1.16(화)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([www.rhof.or.kr](http://www.rhof.or.kr))를 통해 신청하세요.

### I 선발요건

#### 지원금액(한 학기 1인기준)

-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단위로 지급

#### 지원대상

- 농업인의 자녀 ※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,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
-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(첨부 2 :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) 발행 가능한 학생

#### 지원대학

- (학과전공 제한 없이) 대학 재학생 (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: 첨부 3 참조)
- ※ 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,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
- ※ 단,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(첨부 4 참조)

#### 선발성적/이수학점

- 2017.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**80점 이상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), 12학점 이상** (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: 3학점 이상) 이수자
- ※ 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
#### 소득분위

- 2017.2학기 소득분위 **기초~8분위**만 신청가능 (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)
- ※ 단,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
- ※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최대 지원가능 학기

- 최대 8개학기
- ※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
- ※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(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)

#### 계속지원 조건

- 성적(백분위 80점이상, 12학점이상), 소득(기초~8분위)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
- ※ 휴학(군휴학 포함), 편입,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
- 농업인의 자녀

#### 심사

- 정량지표(성적, 소득분위)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

#### 기타사항

휴학 및 복학 예정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휴학자(군휴학 포함)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</li> <li>■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,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</li> </ul>
편입자 (전공심화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, 편입한 학교의 2017.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</li> <li>※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</li> </ul>
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액장학생, 기타 재단 장학금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(제적, 자퇴, 징계자,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,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)</li> <li>⇒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(부분반납 불가)</li> <li>■ 국가장학금(1)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(교내·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·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)</li> <li>※ 단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</li> </ul>

## II 신청기간

□ 신청(구비서류 업로드 등) 기간 : '18.1.5(금) 09:00~1.16(화) 17:00

## III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

□ 신청방법(학생→재단)

-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(인증절차 후)→② 장학금 신청하기→  
 ③ 구비서류 업로드(첨부 1, 2 참조)→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→⑤ 신청완료

### 【주의사항】

-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
- 신청 후,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
-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: “농림축산식품부” 로 신청

□ 선발절차



## 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

### 1. 지급방법 (재단→학교→학생)

- (재단→대학)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
- (대학→장학생)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

### 2. 장학금 반납

#### 가. 반납대상

- (전액장학생)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
- (등록금초과자)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
- (기타사항)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  - 제적, 자퇴, 징계자,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
  -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, 장학금 포기자 등

#### 나. 반납방법 (학생→학교→재단)

※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

반납대상	재단 장학금 지급 전	재단 장학금 지급 후
전액장학생,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않는자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(부분반납 불가)</li> <li>※ 단, 질병,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</li> </ul>
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초과금액 변경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장학금(1)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(단, 교내·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·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)</li> </ul>

## V 기타사항

### 1. 성적처리 안내 (학교)

구분	처리내용
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, 재단에서 직접 입력, 심사</li> </ul>
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탈락처리</li> </ul>
Pass/Non-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<b>80점 이상인 경우 추천</b>                      ※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</li> <li>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</li> </ul>
복학예정인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, 학점 적용</li> </ul>

※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

### 2.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

자격상실 기준내용	처리 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수 학점 미달자</li> <li>이수 성적 미달자</li> <li>소득분위(0~8분위) 미충족자</li> <li>구비서류 불충분(미비) 제출자</li> <li>제적, 자퇴, 징계자, 非농식품계열(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) 전과자, <b>휴학생(일반휴학, 군휴학 포함)</b>, 편입생,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</li> <li>전액장학생,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</li> </ul>	<b>자격상실</b>
※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※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	

## VI 2018년 2학기 주요 변경사항

- 저소득층 학생 성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하는, 'C학점 경고제' 도입('18.2학기)

구분	현행	변경
적용대상	계속장학생	계속장학생 중 저소득층(기초~2분위)
성적기준	백분위 80점 이상	백분위 70점 이상~80점 미만
유예기간	없음	2개 학기까지 인정
적용시기	-	2018.2학기부터

【첨부 1】 ※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함

## 신청자(학생본인)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신규자	계속자
재학증명서 원본 1부 *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(단,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)	○	
부모(또는 본인)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* 증빙서류 안내 참조	○ <sup>1)</sup>	
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*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	○	
성적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별도 제출하지 않음</li> <li>■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</li> </ul>	

-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**'17. 11. 28(화)부터**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,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
- \*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도장 확인서명(부서 연락처),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하도록 함
- \*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,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

※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.

1)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(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)

【첨부 2】

##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

※ 아래 구비서류 중,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

구분	구비서류	발행처
농업 (축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</li> <li>■ 농업경영체 증명서</li> <li>■ 농업인확인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li>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</li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한우·육우 등 양육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</li> <li>■ (양돈·양계업)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축산업등록증) 관할 사. 군. 구</li> <li>■ (개체확인) 축협</li> <li>■ (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) 각 거래처</li> <li>※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</li> <li>※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(또는 사료거래확인서)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,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</li> </ul>
임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</li> <li>■ 농업경영체 증명서</li> <li>■ 농업인확인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li>*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</li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li>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관할 사. 군 산림조합</li> </ul>

- 농업인은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증빙서류가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
- \*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
- \*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(가축사육업)등록증 1부(앞쪽, 뒤쪽 모두 스캔)와 개체확인 각 1부씩 제출하며,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
- \* "농지원부"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
-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
-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**'17. 11. 28(화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**
- 모든 구비서류는 상기 명기된 발행처의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되오니,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

※ 위 서류 중,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

※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 '16.12.29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

※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